

조문 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제 · 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부칙 개정내용 반영

부 칙

<제2023-13호, 2023. 6. 30.>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
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
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시 기관	자기 시험		
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1) ~ 5) (현행과 같음)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				○		○		ISM51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	○				○		○		ISM52	

② <생략>